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68 발의연월일: 2024. 8. 22.

발 의 자:모경종·강준현·김남근

김 윤 · 김준혁 · 남인순

박희승 · 임미애 · 정진욱

허성무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현충일 등 국가기념일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인 욱일승천기를 게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으로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게시, 사용, 유통, 제작 또는 이를 이용한 그 전쟁범죄의 찬양, 고무 등의 행위를 제재할 근거가 없음.

이에 전범기인 욱일기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 개선과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 일본 제국주의 또는 그로인해 발생한 전쟁범죄를 찬양, 고무하려는 목적으로 욱일기 또는 그문양이 포함된 상징물 등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를 교란한 자를 국가형벌권의 행사로써 제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8조의 2).

법률 제 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제5장에 제1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8조의2(욱일승천기등 제작, 유통, 사용) ① 일본 제국주의 및 그전쟁범죄행위를 찬양, 고무 또는 선전할 목적으로 욱일승천기 또는 그 문양의 전부 또는 충분히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일부가 포함된 옷, 깃발, 물건, 휘장, 마스코트 등 상징물(이하 "욱일기등"이라 한다)을 국내에서 제작·유통하거나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용·착용하거나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 공공의 평온·질서를 교란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욱일기등을 역사의 재현을 위하여 영화, 공연 또는 전시에 사용하거나 교육, 연구, 보도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지118조의2 (육일승천기등 제작, 유통, 사용) ① 일본 제국주의 및 그 전쟁범죄행위를 찬양, 고 무 또는 선전할 목적으로 욱일 승천기 또는 그 문양의 전부 또는 충분히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일부가 포함된 옷, 깃 발, 물건, 휘장, 마스코트 등 상 정물(이하 "육일기등"이라 한 다)을 국내에서 제작・유통하 거나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용・착용하거나 누 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 공공의 평온・절서를 교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욱일기등을 역사의 재현을 위하여 영화, 공연 또는 전시에 사용하거나 교육, 연구, 보도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 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벌하	현 행	개 정 안
		제118조의2 (욱일승천기등 제작, 유통, 사용) ① 일본 제국주의 및 그 전쟁범죄행위를 찬양, 고무 또는 선전할 목적으로 욱일 승천기 또는 그 문양의 전부 또는 충분히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일부가 포함된 옷, 깃발, 물건, 휘장, 마스코트 등 상징물(이하 "욱일기등"이라 한다)을 국내에서 제작·유통하거나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장소에서 사용·착용하거나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게시하여 공공의 평온·질서를교란한 자는 2년 이하의 정역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② 욱일기등을 역사의 재현을위하여 영화, 공연 또는 전시에사용하거나 교육, 연구, 보도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

지 아니한다.